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61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388 호

1973.7.19.

# 시보

차 례

이 영구보존물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되었음.  
1973. 8. 1.  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조 례		
제 791 호	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 조례상 개정조례 .....	3
◎ 교 시		
제 118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변경 및 지적변경 승인 .....	3
제 119 호	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변경 및 지적변경 승인 .....	3
제 122 호	도시계획사업(우선중고등학교) 시행허가 .....	4
제 123 호	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) 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 .....	5
◎ 사 령	.....	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3. 7. 16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점생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791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 
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중 "의무관"을 "의무기정"으로, "의사면허증소지자"를 "전문  
의 자격증 소지자"로 하고

제 3 조 제 1 항 제 7 호 중 "및 교의"를 삭제

제 5 조 중 "운영"을 "하부조직 및 운영"으로 "교육감이"를 교육  
규칙으로 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8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  
변경 및 지적변경승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일부변경과 지적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(73.4.4)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, 성동구청 및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3.7.13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19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변경  
및 지적변경승인

1.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일부변경과 지적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

<p>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호 ( 73. 4.4 )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 가. 노선변경조서</p>	<p>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  1973. 7. 13.  서울특별시 장</p>
---	--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 장	기	점	중	점	비 고
가성	소로	3		6			행촌동 171-36	행촌동 210-649		
"	"	3		6		"	"	"		위치변경

별첨 : 도면표지와 같음 ( 도면생략 ) 도면은 서울시장에 보관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2 호  
도시계획사업 ( 우선중고등학교 )  
시 행 허 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07 호 ( 73.6.29 ) 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 ( 중  
고등학교 종합시설 ) 의 시행을 다  
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도시계획  
법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 
( 73.4.4 ) 에 의하여 이를 고시  
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  
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우선학원

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 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 
1973.7.18.  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궁동 213-2  
의 36 필지  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중고등학교종합  
시설 사업  
3. 사업시행자의성명및 주소 :  
학교법인 우천학원 이사장 장학업  
4. 면 적 : 67, 541  
5. 사업의착수 준공 예정년월일  
착 수 : 73.7.  
준 공 : 73.12.31.

- 6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(별첨)
- 7. 수용또는 사용 칼토치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)
- 8.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조 제 3 항의 관계인주소 성명 (별첨)

별첨 : 도면은 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, 사업시행자가 각각 비치보관합니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3 호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(유류저장및 송유설비시설) 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 (73.1.4) 및 서울특별시공고제 263 호 (72.11.18) 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한 <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산 13-1 일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> 에 대하여 동시설을 일부변경 및 지적변경 승인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
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. 7. 18.

서울특별시장

- 1. 시설명 : 도시계획사업시설 (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)
- 2. 사업시행지의위치 : 경기도시흥군 과천면주암리 산 13-1
- 3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
- 4. 사업면적 : 92,400
- 5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대학석유공사 대표이사 사장 박원석
- 6. 변경내용 : 별첨도서 및 인가증

사 령

◎ 1973. 6. 30

행정과 시 지방행정서기보 박상국  
지방행정서기보에 일함  
1호봉을 급함  
행정과 근무를 명함.

◎ 1973. 7. 13

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이경수  
용산구 근무를 명함.  
강산구 지방행정서기 최규방  
관악구 근무를 명함.  
방호담과환신 지방통신기사보 이광조

실 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.

성동구 근무를 명함

① 1973.7.15

감사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이규환

감사담당관실 지방 행정주사

김건식

서대문구 근무를 명함

서울특별시